

정책연구용역체계 개선방안

2005. 8.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목 차

I. 추진경위	1
II. 정책연구용역 현황 및 문제점	2
III. 정책연구용역체계 개선방안	7
IV. 후속조치 추진계획	14

< 참고자료 >

1. 부처별 정책연구비 예산 및 집행현황
2. 부처별 정책연구관리체계 현황
3.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I. 추진 경위

- 대통령님께서서 정책연구비의 집행실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
(‘05.1.18 정부혁신위의 국책연구소 개선안 보고서)
※ 총리님도 개선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토록 지시(‘05.2.15 국무회의시)
- 정부혁신위를 중심으로 역할분담 및 추진일정 등 협의
(‘05.1.29, 2.14, 혁신위 · 청와대 · 기획예산처)
-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의견 수렴(‘05.2.22)
- 정책연구용역 실적조사(‘05.2~3월) 및 담당공무원 설문조사(‘05.3월, 21개 부처 91명), 전문가(광운대 최영훈) 자문(‘05.3~4월)
- 정책연구용역체계 개선TF* 운영(‘05.4.10~6.17, 6회 개최)
* 혁신위(주관), 청와대, 기획처, 재경부, 행자부 등으로 구성
- 정부혁신위 본회의 심의(‘05.7.1)

— < 참고 : 정책연구비 개요 > —

- 정책연구비는 '98년 총리실 연구회체제로의 전환에 따라 정부출연(연) 기본사업비 일부를 재원(385억원*)으로 관련부처별로 신설
* 인문 30%(30억원), 경제 50%(122억원), 과기계 20%(233억원)
- 정책대안 마련, 각종 조사·분석 등 연구
 - 제도개선 및 정책대안 마련 (예 : 과징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 정책현황의 조사·분석·평가 (예 : 중소도시 교통정책 평가)
 - 각계 의견 수렴 (예 : 공무원 단결권 관련 여론조사)
- 정책연구비 집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원가 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재경부 예규) 적용

II. 정책연구용역의 현황 및 문제점

1. 정책연구비 집행현황

□ 최근 3년간 정책연구비 총 613억원 집행 (과제수 1,703건)

(억원, 건)

	'02년	'03년	'04년	계
▪ 예산	216	212	226	654
▪ 집행	200	202	211	613
▪ 과제수행 건수	537	556	610	1,703

□ 부처당 평균 10억원 집행, 30여건 과제 발주

(억원, 건)

	계	산자부	재경부	과기부	통일부	기타
▪ '05예산	234	34	30	20	4	146
▪ 집행액 ¹⁾	204	29	31	31	4	109
▪ 과제수행 건수 ¹⁾	568	69	73	48	45	332

1) '02~'04년간 집행실적 평균치

□ 용역수행기관은 정부출연기관이 50%이상 차지

	계	출연기관	대학	학회·협회	개인
▪ 과제 건수 (비중)	1,703 (100%)	867 (51%)	424 (25%)	389 (23%)	23 (1.4%)

□ 전체과제의 2/3이상인 용역비 3천만원 이하

	계	1천만원 이하	1~3천만원	3천만~1억원	1억원 이상
▪ 과제 건수 (비중)	1,703 (100%)	203 (12%)	963 (57%)	491 (29%)	46 (2.7%)

2. 문제점

【 종합관리체제 】

□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종합적 관리체제 취약

- 정책연구용역의 수행 절차에 관한 정부내 통일된 관리규정 부재
 - 일부 부처는 자체 규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내용이 상이하며 상당수 부처는 자체 규정도 미비
- 정부내 정책연구를 종합적으로 점검·관리하는 기능이 취약
 - 개별 부처내에서도 정책연구에 대한 기획·관리기능 미흡
 - ※ 일부 부처는 과제선정위원회 또는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

선정위원회 운영	모든 과제	대부분 과제	일부 과제	미운영
비율	23%	28%	13%	36%

-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정부차원의 정보관리체제 부재
 - 개별 부처도 과제명·연구자·용역비 등 주요목록만 관리

【 정책과제 및 연구자 선정단계 】

□ 연구과제 및 연구자 선정의 공정성·투명성 부족

- 연구과제 선정은 부처 내부 위원회 또는 주무부서에서 결정
 - 4개 부처만 외부전문가 포함 선정위원회를 제한적으로 운영

과제선정 외부부탁	있음	없음	기타	부탁반영정도 : 53%
비율	33%	55%	12%	

- 선행 연구에 관한 조사 및 중복·유사 과제 사전 점검기능 미흡
- 연구자 선정은 주로 과제담당 부서에서 결정
 - 공모 또는 인력 DB를 통한 최적 연구자 발굴노력 부족

외부전문가 인력DB 운영	운영	미운영 및 기타
비율	35%	65%

※ 전체 과제의 82%가 발주기관이 연구자를 지정하는 수의계약 형식

【 용역발주 및 중간관리단계 】

□ 용역방식 및 용역비 지급기준이 획일적

- 대부분의 정책연구는 목적, 용역비 규모, 용역기간 등 과제의 특성에 무관하게 종합보고서 제출형식 채택
 - 구두자문, 공동작업, 원고 제출 등 다양한 용역방식을 감안한 관리규정 부재와 경직적 용역관행에 기인

현행 용역방식 개선방법	공동작업	구두자문	아이디어 용역	기타
비율	48%	38%	7%	5%

- 용역수행기관의 특성 및 과제 참여율 등에 관계없이 용역비(인건비) 단가를 동일하게 적용
 - 연구인력 과다 계상 등 편법집행을 조장

※ 인건비 기준(월)은 책임연구원 194만원, 연구원 123만원, 연구보조원 85만원, 보조원 55만원 (근거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 용역 발주 후 중간점검 · 관리 기능이 대체로 미약

○ 상당수 과제는 용역기간 중 중간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연구결과
의 부실 초래

- 용역기간 종료시점에서 대폭적인 수정을 요청하는 주 요인

※ 실태조사결과 중간점검을 시행하는 비율이 22%에 불과

○ 용역 발주 공무원은 업무부담 과중, 용역결과에 대한 책임회피 등
을 이유로 용역수행과정 참여에 소극적

연구자와의 정기적 회의 운영	운영	미운영
비율	67%	33%

□ 용역비 정산의 복잡성

○ 일부 부처는 법적 근거없이 모든 용역비에 대해 영수증 첨부 등
정산자료를 요구하고 있어 연구자의 정산부담 과중

※ 현행 규정상 선금에 대해서만 정산 (재정부예규 : 선금지급요령)

【 결과평가 및 활용단계 】

□ 연구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환류 기능 미흡

○ 공정성 · 투명성을 갖춘 평가체계가 취약하며, 일반적으로 과제 담
당부서 내부절차로 종결처리

- 일부 부처는 외부전문가 참여 하에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결
과 반영시스템은 취약

과제평가위원회 운영	미운영	일부운영	대부분 운영	모두 운영
운영 비율	37%	33%	18%	12%

※ 과제평가위원회 구성: 공무원 43%, 외부전문가 7%, 공무원·외부
전문가 혼합 : 50%

□ 정책연구 결과의 활용도 저조

- 연구결과를 정책대안 발굴 등에 직접 활용하기 보다는 대부분 정
책에 단순 참고하는 수준
- 부적절한 과제·연구자 선정, 중간관리 소홀, 평가기능 취약 등에 기인

< '02-'04년간 연구결과 활용유형 >

계	정책대안 발굴	정책 참고	조사분석	통계/DB
1,703건 (100%)	105건 (6%)	1,399건 (82%)	150건 (9%)	49건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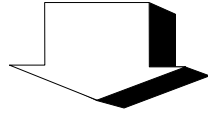
□ 연구결과 및 평가결과의 외부 공개 미흡

- 일부 과제에 대해서만 연구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
- ※ ○○연구원 등 8개 연구기관은 연구결과물의 목록조차 작성하지
않는 등 종합목록관리체도가 없어 연구기관, 중앙부처, 일반인
등 활용 미흡(감사원 지적사항 : '92년)

Ⅲ. 정책연구용역체계 개선방안

< 개선목표 >

- 공정하고 투명한 정책연구용역체계를 구축하여 예산낭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연구의 품질과 활용도를 제고



< 개선방안 >

- ① 종합관리체제 정비
 - ① 정책연구관리규정(총리훈령) 제정 ② 정책연구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③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 ② 과제·연구자 선정의 공정성 제고와 연구자 저변 확대
 - ① 과제 및 연구자 선정절차 개선 ② 전문가 DB 구축·활용
 - ③ 용역방식 및 용역비 기준의 합리화
 - ① 활용목적·연구특성에 따라 용역방식 다양화
 - ② 용역비 지급기준 현실화
 - ④ 중간점검 및 연구결과평가 강화
 - ① 용역수행 중간점검 의무화 ② 실효성있는 평가체제 구축
 - ⑤ 연구결과 활용도 제고 및 사후관리 강화
 - ① 연구결과 및 활용상황 공개 ② 연구의 성과관리 강화
- ※ 개선방안을 '06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금년말까지 후속조치 완료

1. 종합관리체제 정비

1-1 정책연구관리규정(총리훈령) 제정

- 정책연구관련 정부차원의 통일된 지침을 제시하는 규정 제정
 - 과제 및 연구자 선정, 연구결과 평가 및 공개, 종합 DB관리, 심의 및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

1-2 부처별로 「정책연구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

- 구성 : 위원장(정책홍보관리실장), 관련 국·과장, 외부전문가 등
 - 전체위원중 일정비율이상(20-50%) 외부전문가 참여 의무화
- 기능 : 정책연구용역 종합관리 및 중요사항 결정
 - 연구과제 및 연구자 선정
 - 연구과제 중복여부 사전 점검 및 성과목표 제시
 - 과제별 평가위원 선임 및 연구결과 평가
 - 연구결과 공개 및 활용상황 점검 등

1-3 「정책연구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

- 모든 부처의 연구용역내용을 종합관리
 - 현행 「대한민국전자정부」(www.egov.go.kr) 등에 「정책연구용역」창을 개설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부처 홈페이지와 연계
 - 각 부처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정책연구내용 관리
- 완료과제, 진행과제, 발주예정 과제로 구분하여 자료 게재
 - 최근 5년간 정책연구용역 자료도 소급하여 입력

2. 과제 · 연구자 선정의 공정성 제고와 연구자 저변 확대

2-1

연구과제 및 연구자 선정절차 개선

- 부처별로 구성된 정책연구심의위원회를 통해 과제 및 연구자 선정 심의 및 중복연구 여부 점검
- 3,000만원 이상의 과제에 대해서는 공모를 통해 연구자 선정

< 과제 및 연구자 선정 절차 (예시) >

수요조사(정기/수시) ⇒ 선행연구와의 중복성 검토 ⇒ 자체 심의
⇒ 과제확정 ⇒ 연구자 공모* ⇒ 연구자 확정

* 공모계획 공고 → 응모 → 응모자 심사(최적의 연구자 선별)

※ 용역방식에 따라 선정절차 조정

2-2

전문가 DB 구축 · 활용

- 업무분야별로 전문가 DB를 구축하고, 「종합정보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관리
-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민간연구소 뿐만 아니라 전문성 있는 퇴직공무원도 포함
- 전문가에 대한 주요경력, 전문분야, 용역수주실적 등 게재
- 연구자 및 평가위원 선정시 전문가 DB를 최대한 활용

3. 용역방식 및 용역비 기준의 합리화

3-1

활용목적 및 연구특성에 따라 용역방식을 다양화

보고서 제출형 용역(현행 방식)

- 중장기 과제 : 현행과 같이 종합보고서 작성
- 단기 과제 : 약식의 분석보고서 작성

의견수렴형 용역

- ① 정책 현안에 대하여 지정된 전문가가 의견 및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방식
- ② 정책현안에 대한 불특정 다수의 의견 및 아이디어를 공모
 - 공모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의견수렴

공동작업형 용역

- 일정기간 공무원과 외부전문가가 조사·분석, 정책대안 마련 등 공동작업 수행
 - 공무원의 현실감과 연구자의 전문성 조화

- 용역비중 인건비 단가를 현실에 맞게 조정
 - 연구자의 보수수준을 토대로 인건비 단가를 조정하고, 연구자의 경력·연구실적·연구참여율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
 - 구체적 기준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명시
 - 용역방식 다양화에 따른 용역비 지급방식 개선
 - 보고서제출형 : 현행 용역비 지급방식 적용
 - 의견수렴형 : 원고료 및 평가등급별 차등 지급
 - 공동작업형 : 인건비 위주 지급
 - 실효성 있는 평가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용역비의 일정비율을 평가비로 인정
 - 용역비 정산대상의 명확화 및 정산방법의 간소화
 - 정산 대상 : 선금 지급액에 한정(선금지급요령 제5조)
 - 정산 방법 : 사용내역서 제출(중요사항은 증빙서류 첨부)
- ※ 선금정산은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 등과 같이 계약목적 달성에 합당한 용도에 사용했는지 여부 확인

4. 중간점검 및 연구결과평가 강화

4-1

용역수행 중간점검 의무화

- 현실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용역수행 과정에서 공무원과의 협의 확대 및 중간점검 의무화
 - 용역계약서에 공무원과의 협의 및 중간점검일정 명시

4-2

실효성있는 평가체제 구축

- 과제별 평가위원을 선임하여 연구결과를 내실있게 평가
 - 평가위원은 중간점검과정에 참여하여 보완사항 등 검토의견을 연구자에게 제시하고, 최종 평가결과는 위원회에 제출
 - 평가는 사전에 제시된 성과지표를 기준으로 실시
- 투명성 제고를 위해 평가위원, 발주부서 담당공무원의 실명을 용역결과보고서에 명시(용역실명제)

5. 연구결과 활용도 제고 및 사후관리 강화

5-1

연구결과 및 활용상황 공개

모든 연구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

○ 공개대상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대상 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책연구용역 결과

* 법령상 비밀정보, 국방·통일·외교·안보 정보, 사생활 침해 정보 등

○ 공개방법 : 부처 홈페이지에 '정책연구용역'창을 개설하여 등재

○ 공개시기 : 용역 종료후 6개월 이내

연구용역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연구결과의 활용여부를 점검하여 「정책연구심의위원회」에 보고

○ 위원회 보고내용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등재

5-2

연구 성과관리 강화

재정사업 성과관리 차원에서 매년 부처별로 용역절차·결과 및 활용상황을 점검

○ 문제발견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고 감사원 등에 통보

IV. 후속조치 추진계획

본 개선방안이 '06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규정 제정 및 시스템 구축 등 후속조치를 금년내 완료

□ 관련규정 정비

- 「정책연구관리규정」(총리훈령) 제정 : 행자부, '05.12월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 가격 작성준칙」(재경부 예규) 개정 : 재경부, '05.12월
- 「정책연구용역 업무매뉴얼」 작성 : 행자부, '05.12월

□ 정보관리체제 구축

- 「정책연구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 행자부, '05.12월
- 개별 부처 홈페이지에 「정책연구용역」 창 개설 및 최근 5년간 정책 연구 초록내용 입력 : 각 부처, '05.12월

【참고 1】 부처별 정책연구비 예산 및 집행현황

(억 원)

부 처 명	2002		2003		2004		2005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재정경제부	29	24	29	26	45	43	30
외교통상부	6	5	6	3	6	6	6
기획예산처	4	4	4	4	4	3	6
공정거래위	1	1	1	1	1	1	2
농림부	9	9	9	9	9	8	15
산업자원부	32	30	30	26	35	32	34
보건복지부	12	11	12	10	14	13	16
노동부	10	10	10	10	10	10	12
건설교통부	17	15	23	26	23	22	23
철도청	1	1	1	1	1	-	-
해양수산부	6	6	6	5	6	5	6
해양경찰청	-	-	1	1	1	1	1
환경부	9	9	9	8	10	10	10
통일부	4	4	4	4	4	4	4
법무부	2	2	2	1	2	2	2
행정자치부	2	2	3	2	3	3	3
교육부	13	12	13	12	13	12	25
문화관광부	1	1	1	1	1	1	1
법제처	3	3	3	3	2	2	2
여성부	3	3	3	3	5	5	5
과학기술부	43	39	33	37	20	17	20
국방부	9	9	9	9	9	9	9
식약청					2	2	2
과기부(기초)	(34)	(34)	(34)	(34)	(44)	(44)	(44)
과기부(산업)	(36)	(36)	(36)	(36)	(46)	(46)	(46)
과기부(공공)	(46)	(46)	(46)	(46)	(56)	(56)	(56)
합 계 (괄호 포함)	216 (332)	200 (316)	212 (328)	202 (318)	226 (372)	211 (357)	234 (380)

()내 숫자는 명칭만 정책연구비이고 내용은 과학기술연구개발비

【참고 2】 부처별 정책연구관리체계 현황

부처	자체규정	위원회 운영현황			자료관리	자료공개 (전체과제중 공개 비율)
		위원회명칭	민간위원 인원	'04년 개최		
과기부	정책연구사업관리지침 (훈령), 정책연구평가 지침(내부)	정책연구심의회 (과제선정 및 평가)	6명	4회	· 목록: 종합관리 · 결과: 부서별관리	관련기관배포
교육부	정책연구메뉴얼 (내부)	정책과제심의회 (과제선정)	4명	5회	· 목록 및 결과 전산관리 (종합교육자료실)	홈페이지(90%) 관련기관배포 KISTEP등재
건교부	-	-	-	-	· 목록: 종합관리 · 결과: 부서별관리	홈페이지(100%) 관련기관배포 KISTEP등재
산자부	-	-	-	-	"	홈페이지(50%)
재경부	-	-	-	-	· 부서별관리	홈페이지(10%)
국방부	정책연구관리규정 (훈령)	과제종합심의회 (과제선정, 평가)	1명	2회	· 목록: 종합관리 · 결과: 부서별관리	관련기관배포
여성부	용역사업처리규정 (훈령)	정책용역심의회 (과제선정, 평가)	-	1회	· 전산 관리 (홈페이지)	홈페이지(90%)
외교부	-	-	-	-	· 목록: 종합관리 · 결과: 부서별관리	홈페이지(60%) 관련기관배포 KISTEP등재
통일부	용역관리규정 (훈령)	-	-	-	· 전산 관리	-
해경청	행정정보공개규칙 (훈령)	-	-	-	· 전산 관리	홈페이지(60%)

부처	자체규정	위원회 운영현황			자료관리	자료공개 (전체과제중 공개 비율)
		위원회명칭	만민위원 인원	'04년 개최		
행자부	-	정책연구타당성 심의회(과제선정)	-	-	·전산 관리	홈페이지(60%)
환경부	환경연구심의회규정 (훈령)	환경연구심의회위원회 (과제선정)	3명	1회	·목록: 종합관리 ·결과: 부서별관리	관련기관배포
공정위	행정정보공개지침 (훈령)	정책연구심의회 (과제선정)	-	3회	"	-
농림부	정책연구관리지침 (내부규정)	정책연구심의회	-	2회	·전산관리	홈페이지(80%)
복지부	예산집행심의회규정 (훈령)	예산집행심의회	10명	4회	·목록: 종합관리 ·결과: 부서별관리	KISTEP등재
식약청	정책연구처리규정 (훈령)	예산집행심의회	-	-	·책자관리	관련기관배포
법무부	-	-	-	-	·목록: 종합관리 ·결과: 부서별관리	관련기관배포
기획 예산처	예산집행심의회규정 (훈령)	예산집행심의회	-	2회	"	홈페이지(50%)
노동부	연구사업에관한규정 (훈령)	연구과제선정위원회	-	2회	"	홈페이지(70%)
문광부	예산집행심의회규정 (훈령)	예산집행심의회	-	1회	"	홈페이지(50%)
해수부	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 관리등에관한규정(훈령)	예산집행심의회	-	2회	"	홈페이지(80%)
법제처	-	연구과제선정위원회	-	2회	"	홈페이지(90%)

【참고 3】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요약)

'05.3.23 ~ 25일, 21개 부처 정책연구용역 담당공무원(219명중 91명 응답)

1. 정책연구과제의 수요조사 대상은?
① 내부 직원(29%) ② 부처 자문위원(1%) ③ 외부 전문가(11%) ④ 내부직원·외부전문가(48%) ⑤ 부처의 고위층 지시 (11%)
2. 정책연구과제 기획 시점은?
① 연초(46%) ② 연중 정기적(11%) ③ 수시로(40%) ④ 기타(3%)
3. 정책연구과제 기획시 특정과제가 선정되도록 외부로부터 부탁받은 적이 있는지?
① 있다(33%) ② 없다(55%) ③ 모르겠다(12%)
4. 정책연구과제 선정시 외부로부터의 과제선정 부탁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지?
① 전혀 반영하지 않음(3%) ② 반영하지 않는 편(43%) ③ 반영하는 편(53%)
5. 정책연구과제 선정시 과제선정위원회를 운영하는지?
① 모든 과제에 운영(23%) ② 대부분의 과제에 운영(28%) ③ 일부 과제에 운영(13%) ④ 미운영(36%)
6. 과제선정위원회를 운영하였다면 위원회의 주요 구성원은?
① 공무원(44%) ② 외부 전문가(9%) ③ 공무원·외부전문가 혼합(47%)
7. 연구기관 또는 연구자의 선정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① 연구자 지명도(21%) ② 자기부처의 과제 수행경험(42%) ③ 연구계획서 우수성(32%) ④ 과제 수요조사시 과제청탁한 연구자(4%) ⑤ 부처의 고위층 지시(1%)
8. 정책연구과제의 수행기관 또는 연구자 선정결과에 만족하는지?
① 불만족(1%) ② 대체로 불만족(11%) ③ 그저 그렇다(34%) ④ 만족(54%)
9. 정책연구, 자문 등을 위해 외부전문가 위촉시 선정방법은?
① 동료 및 상관의 추천(57%) ② 소관 연구기관의 추천(15%) ③ 유관기관 및 학회 등에 문의(23%) ④ 인력D/B 활용(5%)
10. 정책자문 및 연구결과평가 관련 외부전문가 인력DB를 운영하는지?
① 운영(35%) ② 미운영(32%) ③ 모르겠다(33%)

11. 현행 연구용역방식보다 더 좋은 용역방식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① 그렇다(34%) ② 아니다(25%) ③ 모르겠다(41%)
12. 만약 '그렇다'면, 다음중 어떤 용역방식이 결과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지?
 ① 아이디어 용역(7%) ② 일정기간 자문(38%) ③ 공동 작업(48%) ④ 기타(7%)
13. 담당하고 있는 정책연구내용을 일반인들에게도 공개했는지?
 ① 비공개(7%) ② 비공개된 편(10%) ③ 공개된 편(41%) ④ 공개(43%)
14. 연구결과를 평가하기 위해 과제평가위원회를 운영했는지?
 ① 모든 연구결과에 운영(12%) ② 대부분의 연구결과에 운영(18%)
 ③ 일부 연구결과에 운영(33%) ④ 미운영(37%)
15. 과제평가위원회를 운영하였다면 위원의 주요 구성원은?
 ① 공무원(43%) ② 외부 전문가(7%) ③ 공무원과 외부전문가 혼합(50%)
16. 정책연구용역 수행기간중에 중간평가를 실시했는지?
 ① 미실시(7%) ② 대체로 미실시(14%) ③ 대체로 실시(57%) ④ 실시(22%)
17. 중간평가를 하는 경우 평가결과가 연구에 반영되었는지?
 ① 미반영(3%) ② 반영되지 않은 편(9%) ③ 대체로 반영(78%) ④ 반영(11%)
18.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기간중에 정기적으로 연구자와의 회의를 하는지?
 ① 그렇다(67%) ② 아니다(33%)
19. 연구결과에 대한 최종평가를 제도화하고 있는지?
 ① 제도화되어 있지 않음(15%) ② 제도화되어 있으나 운영하지 않음(6%)
 ③ 주로 서면보고로 대체(44%) ④ 주로 평가회를 개최(36%)
20. 평가결과가 우수한 것으로 판정한 경우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는지?
 ① 인센티브 없음(49%) ② 자문위원 등 위촉(14%) ③ 추후 연구과제 선정시 우대(35%)
21. 불량연구자와 우수연구자를 판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는지?
 ① 있다(15%) ② 없다(50%) ③ 모르겠다(35%)
22. 정책연구결과가 담당업무 수행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17%) ② 도움이 된 편(74%) ③ 매우 도움이 됨(10%)
23.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① 연구결과 부실(86%) ② 기타(14%)